

#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폐쇄사항)

등기번호	685895					
등록번호	110111-6858950	본점전출				
상 호 담화컴퍼니 주식회사 						
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4, 비116호(서초동, 아크로텔)						
공고방법	· .					
<b>1주의 금액</b> 금 1,000 원						
발행할 <b>주식의 총수</b> 1,000,000 주						
	발행주식의 총수 그 조르 및 가가야	•	자본금의 액	변 경 연 월 일 드 기 여 워 이		

발행주식의 총수9 그 종류 및 각각의	<sup></sup> 수	자본금의 액	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
발행주식의 총수 부톳주식	<del>16,000 주</del> 16,000 주	<del>금 16,000,000 원</del>	
발행주식의 총수	23,530 주		<u>2019.04.09</u> 변경
보통주식	23,530 주	금 23,530,000 원	2019.04.22 등기

- 1. 전통주, 전통제품, 농수축산물, 음식료품의 중개 및 위탁통신판매업
- 1. 특별주류 제조 및 도소매업
- 1. 위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
- 1. 전통제품 교육 및 컨설팅업 1. 광고기획 및 대행업(인터넷, 온라인, 오프라인 포함)
- 1. 양조장관련 여행업
- 1. 기타 주점업
- 1. 부동산 임대업
- 1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
- 1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	임원에 관한 사항
사내이사 이재욱 930924-*****	
사내이사 김태영 940601-*****	
<u>사내이사 김현우 940416-*****</u>	
2019 년 04 월 03 일 사임 20	2019 년 04 월 22 일 등기
감사 김성욱 600305-*****	
대표이사 이재욱 930924-***** 서울특 <sup>1</sup>	<u> 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, 111동 303호(흑석동, 흑석한강</u>
푸르지오)	
대표이사 이재욱 930924-***** 서울특	-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. 104동 703호(흑석동, 흑석한강

등기번호 685895

푸르지오)

2019 년 10 월 29 일 주소변경 2020 년 01 월 07 일 등기

대표이사 김태영 940601-\*\*\*\*\*\*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7, 105동 404호(마북동, 구성자이3차아파트)

사내이사 김영석 940219-\*\*\*\*\*

2019 년 04 월 03 일 취임 2019 년 04 월 22 일 등기

사내이사 박준형 940613-\*\*\*\*\*

2020 년 01 월 03 일 취임 2020 년 01 월 07 일 등기

### 기 타 사 항

1. 주식의 양도

주식을 양도할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1. 본점이전

2020년 1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, 에이동 525호(상현동, 광교우미뉴브)로 본점이전

2020 년 01 월 13 일 등기 동일폐쇄

#### 지점에 관한 사항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,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8층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알06호(삼평동)(술담화 경기도 지점)

2019 년 09 월 04 일 설치 2019 년 09 월 17 일 등기 2020 년 01 월 03 일 폐지 2020 년 01 월 07 일 등기

# 주식매수선택권

- 1.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
  - 회사는 임직원(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 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당사의 이사 이외의 임직 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, 해외영업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 - 1.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
  - 2.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된 자 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
  - 3.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-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

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 단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시기는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직후 6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 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당사의 이사 이외의 임직 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

#### 등기번호

685895

승인을 얻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, 해외영업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
  -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, 해외영업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 - 1.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
  - 2.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
  - 3.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-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
  -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시기는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직후 6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다.
- 1.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 - 2.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  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 - 4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계법규 위 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 를 받은 경우

2020 년 01 월 03 일 설정 2020 년 01 월 07 일 등기

## 회사성립연월일

2018 년 08 월 31 일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

2018 년 08 월 31 일 등기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

- \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\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\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1년09월23일 08시56분29초